

한국 특허청(KIPO)과 캄보디아 산업수공업부(MIH) 간에 체결된 특허 효력 인정 프로그램을 통한 캄보디아 특허 출원 신속 심사와 관련된 안내문

출원인은 한국 특허청(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이하 “KIPO”로 지칭)에 선출원된 대응출원에 대한 KIPO의 심사 결과를 활용하는 특허 효력 인정 프로그램(Patent Recognition Program; 이하 “PRP”로 지칭)에 의거하여 캄보디아 산업수공업부(Ministry of Industry & Handicraft of Cambodia; 이하 “MIH”로 지칭)에 출원된 특허 출원에 대해 캄보디아에서 신속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PRP에 기초한 신속 심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캄보디아 특허 출원은 다음 신청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출원인들은 신청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MIH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 요건

PRP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네 가지 요건이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 (a) PRP를 신청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특허 출원의 최선일(우선일 또는 출원일 중 빠른 날)은 대응되는 한국 특허 출원의 최선일과 동일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특허 출원은 다음 중 하나의 사례에 부합해야 합니다.:

사례 I: 대응되는 한국 특허 출원에 기초하여 파리 협약에 의거해 우선권을 주장하는 캄보디아 특허 출원(예는 부록 1의 그림 A, B, C, D를 참조)

사례 II: 국내 단계에 진입한 PCT 특허 출원을 포함하여 대응되는 한국 특허 출원에 대해서 파리 협약에 의거해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는 캄보디아 특허 출원(예는 부록 1의 그림 E

와 F를 참조)

사례 III: 파리 협약에 의거해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대응되는 한국 특허 출원(국내 단계에 진입한 PCT 특허 출원 등)과 동일한 특허 출원을 기반으로 한 캄보디아 특허 출원 (예는 부록 1의 Figure G, H, I, J, K, L, M을 참조)

사례 IV: 대응되는 한국 특허 출원과 캄보디아 특허 출원 모두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는 동일한 PCT 국제 출원으로부터 파생된 PCT 출원의 국내 단계 출원 (예는 부록 1의 Figure N 참조)

(b) 대응되는 한국 특허 출원은 등록되었어야 합니다.

(c) PRP를 신청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출원의 출원일은 2003년 1월 22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d) PRP를 신청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출원은 보정 등의 과정을 통하여, 캄보디아 출원의 모든 청구항은 등록된 한국 특허의 대응되는 청구항과 동일해야 합니다.

출원인은 KIPO가 등록 결정한 청구항의 일부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청구항들은 대응되는 한국 특허 출원의 청구항(들)과 “동일하다”고 간주됩니다). 한편 삭제되었더라도, 대응되는 한국 특허 출원의 청구항과 캄보디아 특허 출원의 청구항간의 대응 관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청구항 대응 관계표(claims correspondence table)”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캄보디아 특허 출원에 대응되는 한국 특허 출원의 청구항과는 다르거나 새로운 발명이 추가된 청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두 특허 출원은 서로 동일하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응되는 한국 특허 출원의 청구항이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만 한정된 경우, 캄보디아 특허 출원의 청구항이 상기 방법 발명에 종속된 물건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캄보디아 특허 출원의 청구항은 “동일하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2. 제출 서류

PRP 신청하고자 하는 출원인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캄보디아 특허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i. PRP 신청서

ii. 대응되는 동봉된 한국 특허 공보 등본

iii. 한국 특허 공보에 게재된 청구항 및 명세서에 대한 영어 및 크메르어 번역본

※ 영어 및 크메르어 번역본은 PRP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크메르어 번역본은 번역이 정확하다는 출원인의 서약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iv. 청구항 대응 관계표

※ 출원인은 특허적격성이 있다고 판단된 대응되는 한국 특허 출원의 청구항과 캄보디아 특허 출원의 청구항 모두를 상호 대응한 청구항 대응 관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캄보디아 특허 출원의 청구항 수가 청구항 삭제로 인해 대응하는 KIPO 특허 출원의 청구항 수와 같지 않은 경우, 출원인은 두 출원 간의 대응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청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3. 신청서(국문 번역본)

신청 내용: PRP를 통한 신속 심사 신청

신청일:

특허 출원 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대리인:

대리인 주소:

해당 출원은 대응되는 한국 특허 출원(출원 번호: _____)에 대해
파리 협약 등에 의거한 우선권을 주장하며, PRP를 통한 신속 심사를
신청합니다. PRP 신속 심사를 위해 다음 서류를 동봉하도록 한다:

대응되는 한국 특허 출원의 한국 특허 공보 사본

한국 특허 공보에 게재된 청구항 및 명세서의 영어 번역본

한국 특허 공보에 게재된 청구항 및 명세서의 크메르어 번역본

(번역본은 번역이 정확하다는 신고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출원인은 한국 특허 공보의 크메르어 번역본을

PRP 신청을 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항 대응 관계표

청구항 대응 관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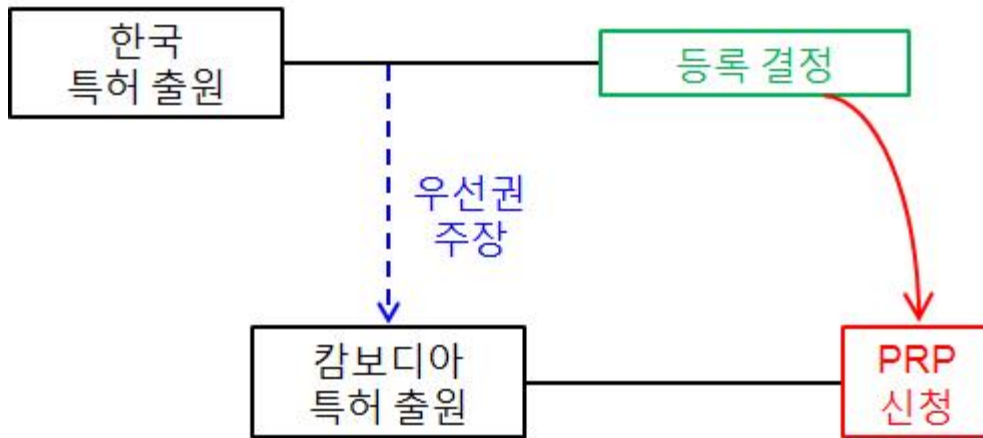
캄보디아 특허 출원의 청구항	한국 특허 출원의 특허 가능하다 판단되는 청구항	두 출원의 상호 대응에 관한 의견

예)

캄보디아 특허 출원의 청구항	한국 특허 출원의 특허 가능하다 판단되는 청구항	두 출원의 상호 대응에 관한 의견
1	1	
2	2	
3	6	청구항 3은 한국 특허 출원의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청구항 6과 동일합니다. 한국 특허 출원의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 3,4,5는 삭제되었습니다.
4	7	청구항 4은 한국 특허 출원의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청구항 7과 동일합니다. 한국 특허 출원의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 3,4,5는 삭제되었습니다.
5	8	청구항 5은 한국 특허 출원의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청구항 8과 동일합니다. 한국 특허 출원의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 3,4,5는 삭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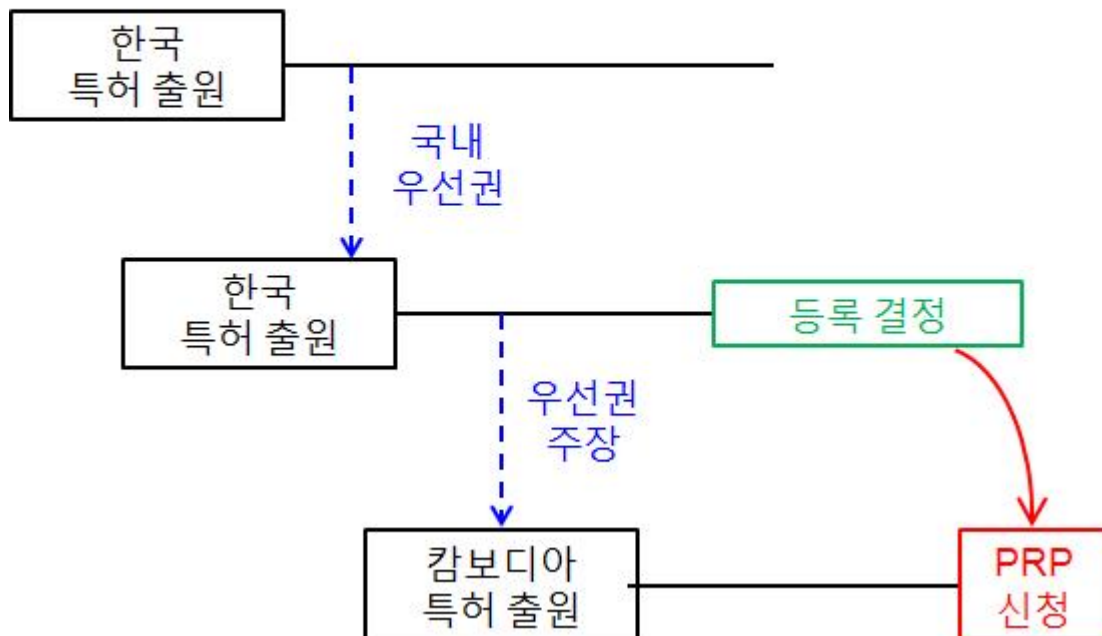
(A) PRP 신청요건에 적합한 사례 (a) (I)

- 파리 루트를 통한 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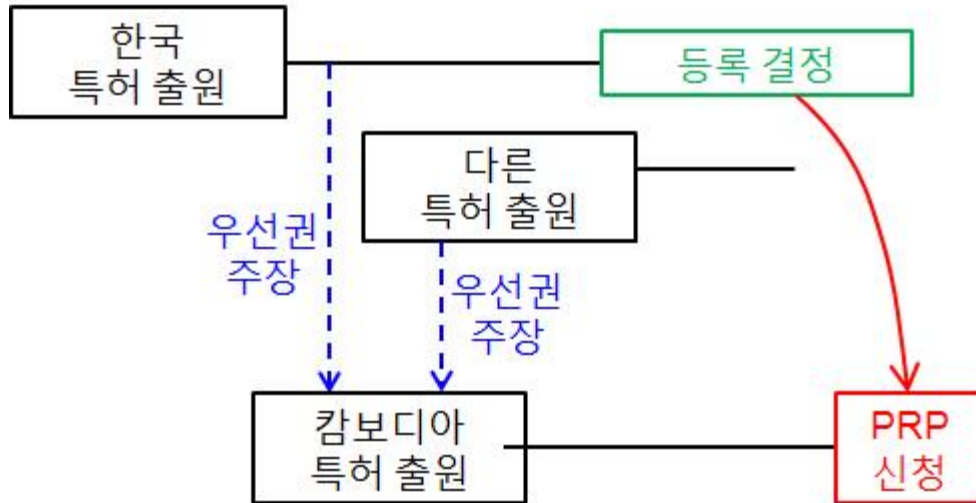
(B) PRP 신청요건에 적합한 사례 (a) (I)

- 파리 루트와 국내우선권 주장을 통한 출원-



(C) PRP 신청요건에 적합한 사례 (a)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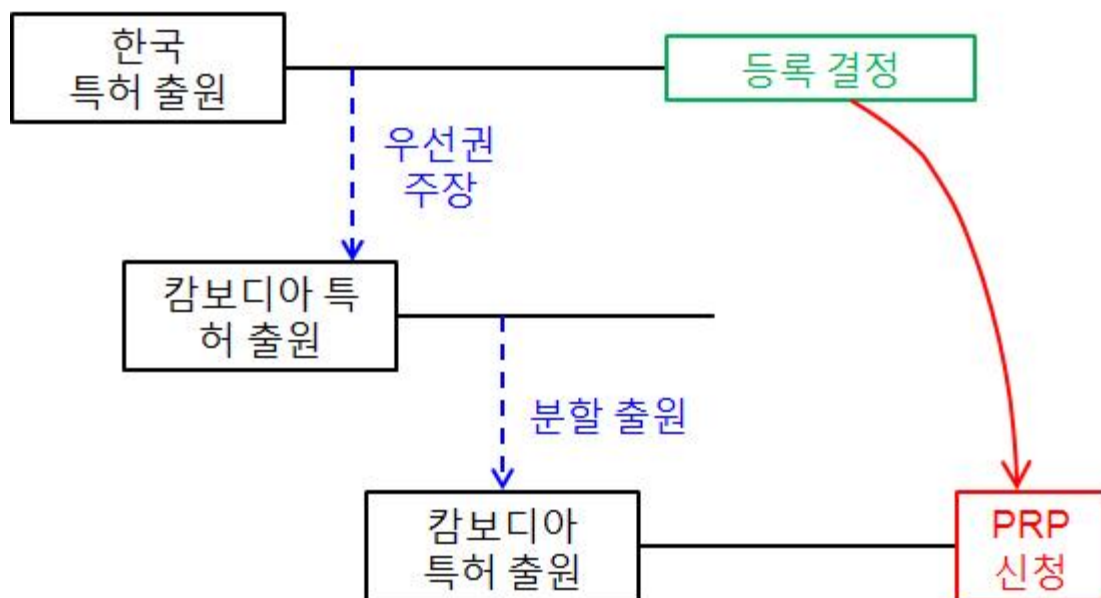
- 파리 루트 및 복합 우선권을 통한 출원 -



다른 특허 출원: 모든 나라에 출원된 특허 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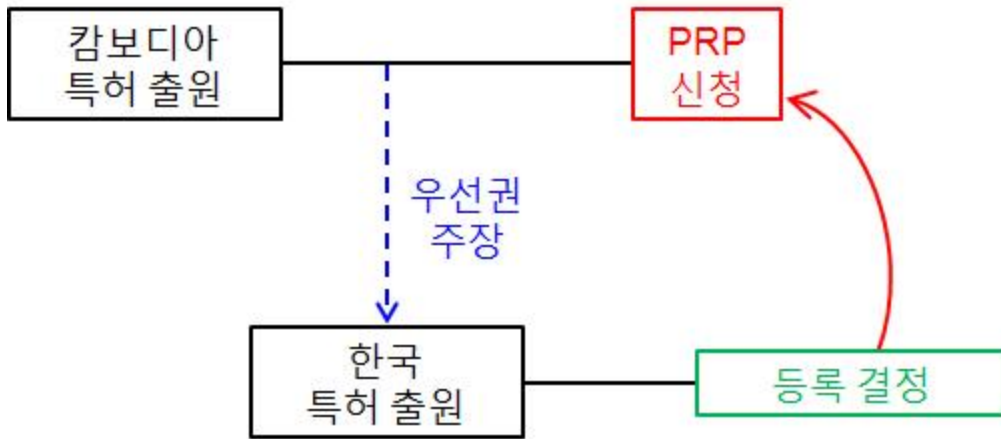
(D) PRP 신청요건에 적합한 사례 (a) (I)

- 파리 루트와 분할 출원을 통한 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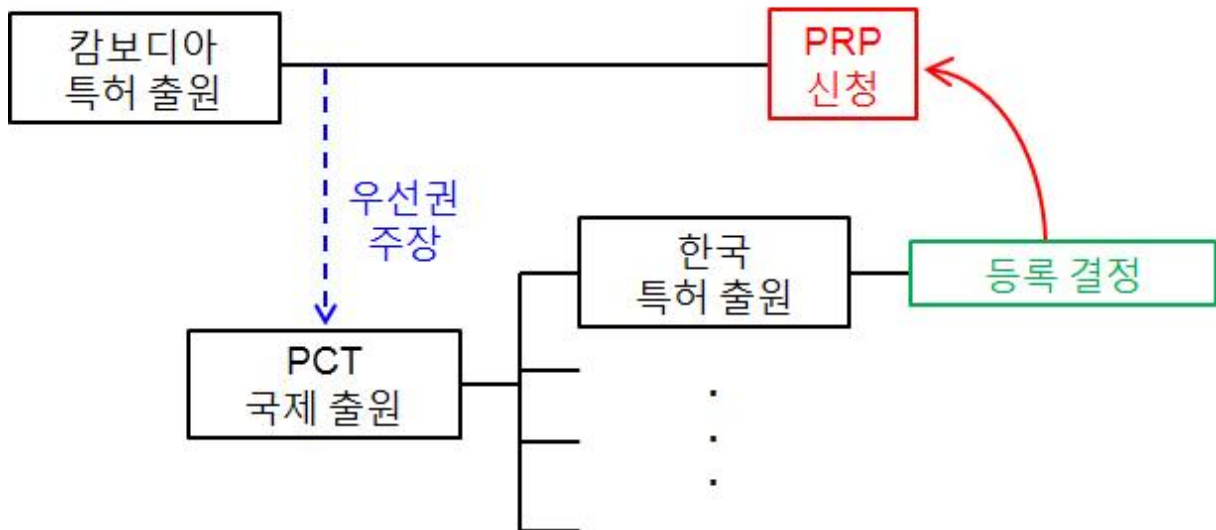
(E) PRP 신청요건에 적합한 사례 (a) (II)

- 파리 루트를 통한 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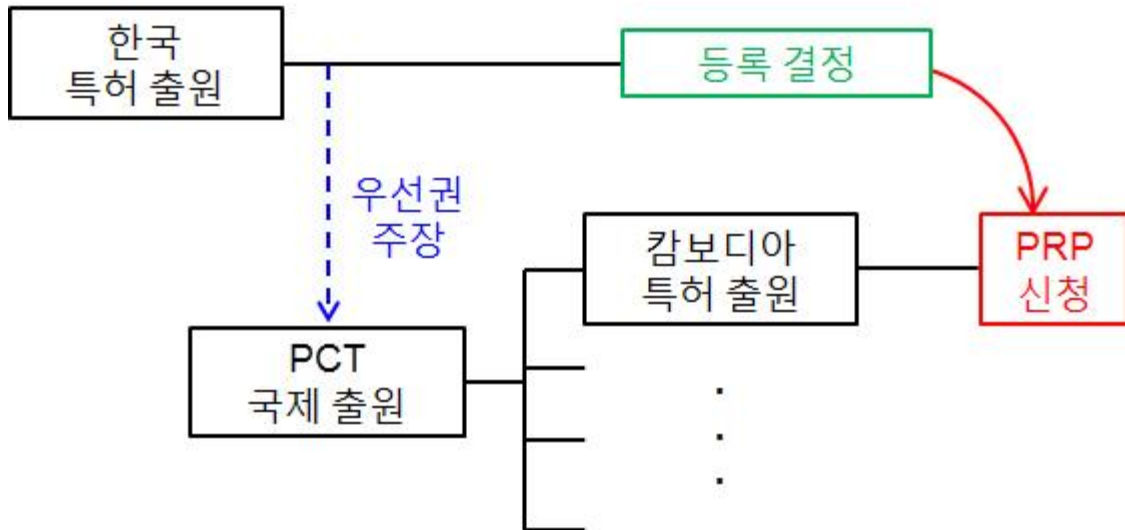


(F) PRP 신청요건에 적합한 사례 (a)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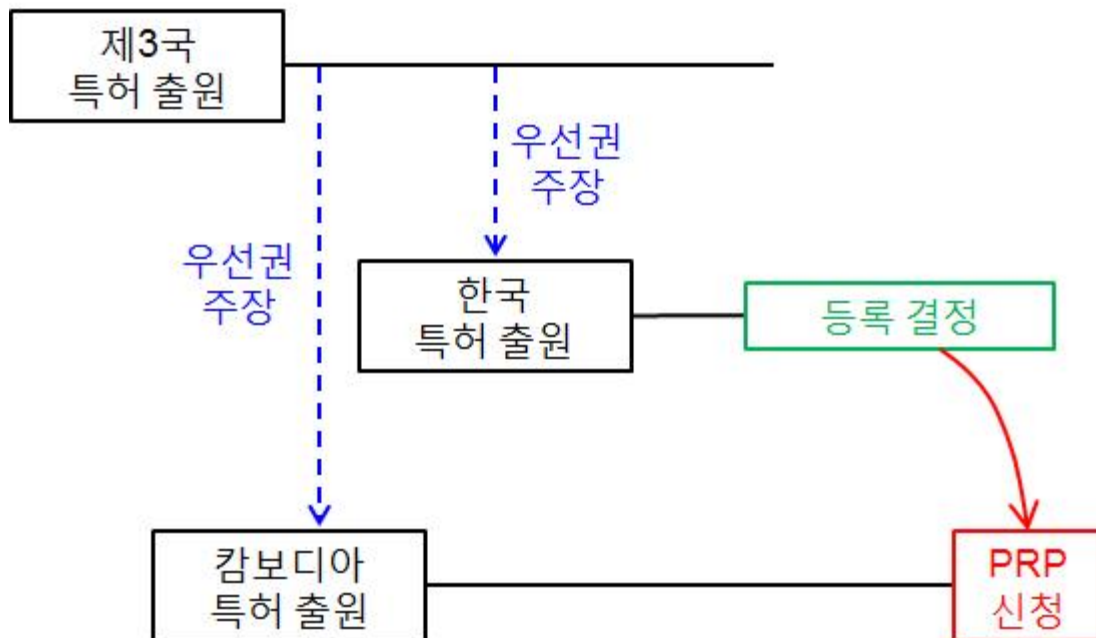
- PCT 루트를 통한 출원 -



(G) PRP 신청요건에 적합한 사례 (a) (III)
 - PCT 루트를 통한 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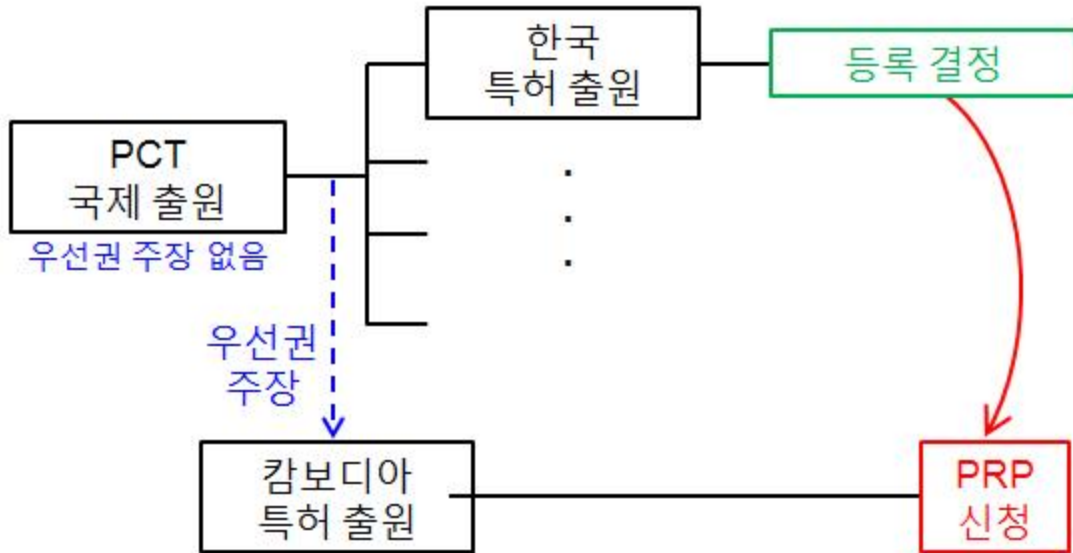


(H) PRP 신청요건에 적합한 사례 (a) (III)
 - 파리 루트 및 제3국 출원을 통한 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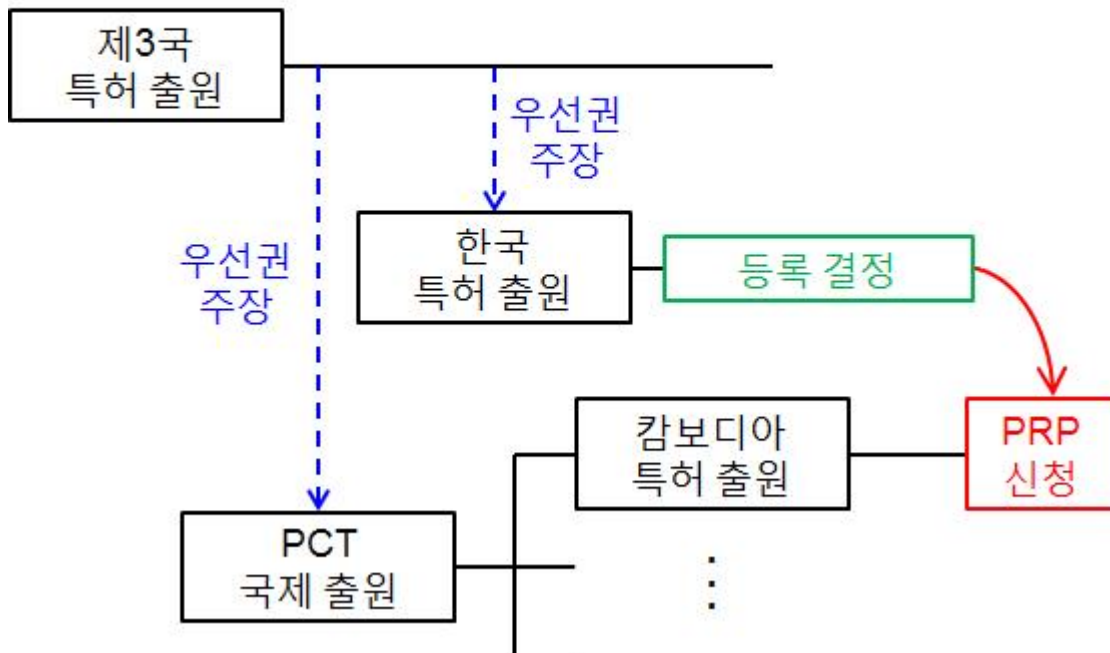
(I) PRP 신청요건에 적합한 사례 (a) (III)

- PCT와 파리 루트를 통한 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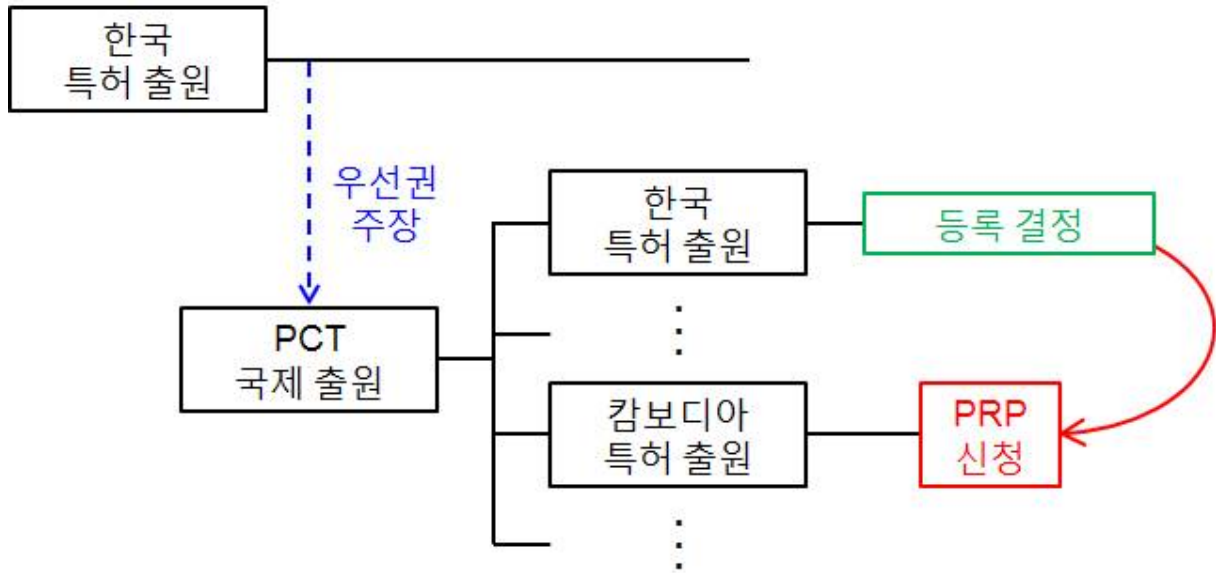
(J) PRP 신청요건에 적합한 사례 (a) (III)

- PCT 루트를 통한 출원, 첫 번째 특허 출원은 제3국 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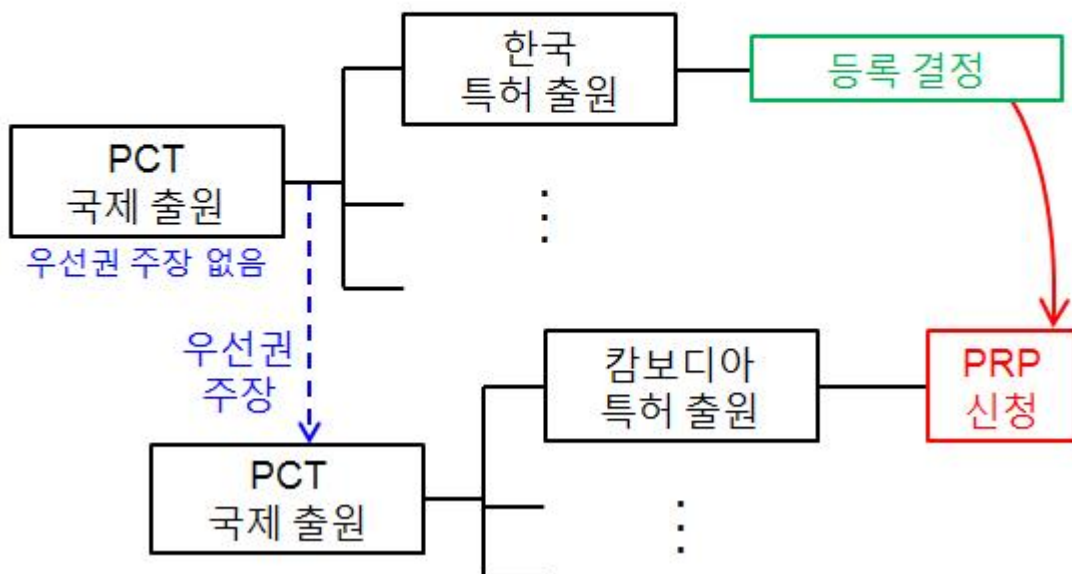
(K) PRP 신청요건에 적합한 사례 (a) (III)

- PCT 루트를 통한 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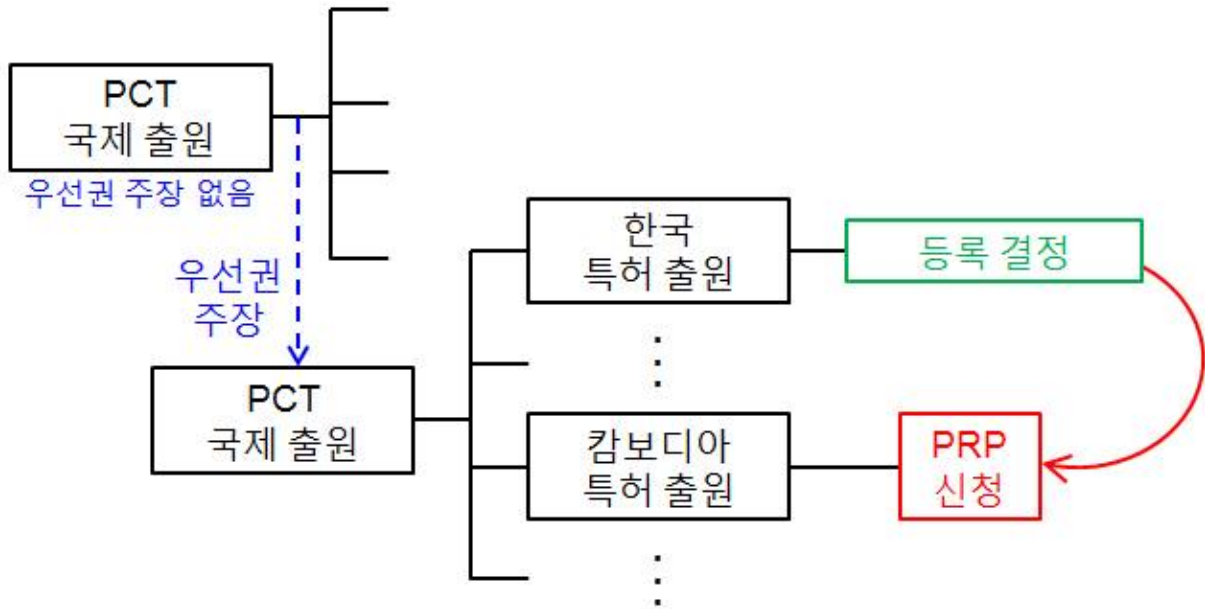
(L) PRP 신청요건에 적합한 사례 (a) (III)

- PCT 루트를 통한 출원 -



(M) PRP 신청요건에 적합한 사례 (a) (III)

- PCT 루트를 통한 출원 -



(N) PRP 신청요건에 적합한 사례 (a) (IV)

- PCT 루트를 통한 출원 -

